

1. 의결주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검정기관 최초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에 갱신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 업무 추가(안 제42조)

○ 현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 외에 ‘갱신’ 업무 위임 추가

* (현행) 검정기관 지정 → (개정) ‘갱신’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제31호 중 “법 제99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 및 제5항”으로,
“지정”을 “지정 및 갱신”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 ⑤ (생략)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⑥ ----- ----- ----- ----- ---
1. ~ 30의2. (생략)	1. ~ 30의2. (현행과 같음)
3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31. 법 제99조제1항 및 제5항 ----- ----- 지정 및 갱신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연 락 처	(044) 200-5618